

## &lt;전호에서 계속&gt;

(c) 어느 때든지 벌꿀이 어떤 다른 물질이나 성분과 혼합되고 그 물품이 판매될 것이면, 그것에 이러한 혼합물 또는 합성물들이 들어있는 포장의 곁에 제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표시하는 인쇄를 하여야 한다. 만일 벌꿀이 그 성분들 중의 하나라면 다른 성분 표시 활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제품은 벌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제공 등을 하거나, 이러한 혼합물 또는 합성물에 이곳에서 제시된 것과 다른 어떤 형태로도 「꿀」이라는 말로 상호를 만들거나 상표를 붙여서는 안되며, 꿀과 유사한 어떤 제품도 혼합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벌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제공 등을 하거나, 이러한 상품이 순수한 꿀이 아닌 이상 「꿀」이라는 말로 상호와 상표를 붙여서는 안된다.

제3절. 「imitation(모조품 또는 위조품)」이란 말은 벌꿀을 다소간에 포함하였든 아니면 간에 벌꿀과 비슷한 생산품의 이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벌꿀을 함유하였으나 꿀과 비슷하지 않은 제품의 상표에는 그 제품의 이름에, 그리고 그 제품의 이름에서 「벌꿀」이란 말과 관련된 위치에, 그리고 그 제품에서 한가지 성분으로서의 두드러짐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정하여지는 성분표시 목록에도 「꿀」이라는 말을 포함시켜도 된다.

제4절. 이상의 항목들을 위반

하는 자는 (경)범죄자가 되며 그에 대한 확정(판결) 위에 범죄자로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역자 주> 몇 해 전의 일이 다. 어떤 아주머니가 불평하기를 『한국 꿀은 왜 그렇게 달은 (甘)가? 미국 꿀은 달지 않아서 좋은데. 한국 꿀은 너무 달다 ... 설탕을 너무 넣은 것 같다.』 역자가 듣고는 어리둥절하여 꿀은 단것이 원칙인데 어디서 설탕 들어간 불량꿀을 사자

하고는 불평하는구나... 생각하



— A.S Michael 번역 : 김수기(부여밀봉원)

다.

우리도 이러한 상표이용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계법령들이 제정되어야만 하겠다. 지금도 의문인 것은 미국에서는 「상품표시법」 등을 위시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의 수중에 이러한 상품이 들어

왔는가?이다.

미국에서는 한때 고과당 옥수

수당액(HFCS)이 꿀과 아주 흡

## 美 천연·위조꿀 상품표시 거울삼아 수입개방후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는데. 『이제 미국 꿀이니 맛을 보라』며 요즘 흔히 나오는 아이스크림통 같은 것을 내 놓는다.

맛을 보니 과연 달지는 않은데 도저히 꿀이라고 볼수가 없었다. 알수 없는 이국(異國)의 밀원식물을 상정하고도 그랬다. 모양은 아이스크림 비슷하나 얼음은 아니었다. 다시 영어로 된 상표를 살펴보니 꿀(HONEY)이란 커다란 고운색의 글

나 꿀혼합식품이란 뜻의 「Honey blend」를 좀 바쁜 미국사람들을 위하여 「꿀」자인 「Honey」만 읽고 대충 넘어가기 쉽도록 인쇄하여 놓은 것이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미국 꿀도 가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꿀이 흔해 값도 싸고 가짜가 없으리라고 믿었다가 이제는 미국 꿀 전체

사하여 간단히 꿀과 섞기만 하여도 되는 것을 크게 골치아파 하였지만 우리네는 이처럼 손쉽게 사기쳐 먹을 수 있는 것을

공장에서 생산해내지 못해서인지 일부 꿀벌들이 고생을 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양봉업계가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섞음질 가짜꿀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을 감시할 강력한 규제법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

품행정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정상적으로 벌꿀을 생산해 내는 대부분의 양봉가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생산된 벌꿀을 정부가 할 수 없으면 민간단체로 하여금 품질을 인증토록하는 업무를 과감히 이양하여 확인증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어 양봉가들의 편리한 제도임은 물론 소비자들 또한 안심하고 편리하게 벌꿀을 구입할 수 있으니 양측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인 것이다. 말하자면 「벌꿀 생산실명제」인 동시에 「벌꿀 품질인증제」인 셈이다.

협회에서도 이러한 제도시행에 지금까지 상당히 애써온 것은 사실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벌양봉가 차원의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관계 행정이 생산은 농림부, 유통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원화된 관리행정으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전 축산업계가 정부에 대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 요즘 우유 문제가 세간에 시끄러워져 축산농가들만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벌꿀도 역시 오래된 숙원사항인데 생산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관리행정이 빠진 제품화된 상품 자체 하나만 놓고 감시를 행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협회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 피투(P<sub>2</sub>) 신제품 생산판매

하절기 새로운 제조기술에 의해 생산된 P<sub>2</sub> 신제품은 금년봄 생산된 일부 제품의 단점을 완벽한 실험하에 보완시킴으로서 가시용애 및 꿀벌진드기를 100%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제품입니다.

가시용애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봉군은 P<sub>2</sub>스트립의 교환시기를 10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처리하십시오

- ① 탁월한 효과와 저렴한 가격**
- ② 편리한 사용법**
- ③ 소상 전면에 부착하므로 소비 취급에 편리**
- ④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방제효과 지속**
- ⑤ 꿀벌과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

가시용애 및 꿀벌진드기의 시작과 마지막 구제시기인 2월부터 11월은 금년과 내년도까지 양봉사업의 승패를 가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시용애 피해, P<sub>2</sub>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품 제조원

(주) 대성미생물연구소  
(주) 한동  
(주) 중앙케미칼

판매원(전국총판) ... 한국 유일의 봉기구 전문 생산업체

**고 려 양 봉 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5-16  
☎ 053-424-8252 · 5040, FAX 053-425-1310

은행 온라인구좌번호

(예금주: 고상인)

• 농협 703-01-004324

• 우체국 700039-0106059

• 국민은행 601-01-0018-266